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시립교향악단 출연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1214

2023. 9. 15. 문화체육관광위원회

I.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23년 8월 14일, 서울특별시장

나. 회부일자 : 2023년 8월 21일

다. 상정결과 : 【서울특별시의회 제320회 임시회】

- 제4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3.9.11.)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 및 답변, 의결(원안가결)

Ⅱ. 제안설명의 요지(문화본부장 최경주)

1. 제안이유

- 가. 서울시에서는 시민에게 문화예술 향유의 기회를 확대하고 양질의 공연예술 활동을 제공하기 위하여 각종 사업을 수행하는 재단법인 서울시립교향악단의 운영을 지원하고 있음.
- 나. 이에 2024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시립교향악단 출연 여부에 대하여「지방재정법」 제 18조 제3항에 따라 미리 그 동의를 얻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사업개요
 - 1) 사 무 명 :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시립교향악단 출연금
 - 2) 추진근거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시립교향악단 설립 및 운영 조례
 - 3) 필요성 : 서울의 문화예술 진흥과 시민의 문화예술 활동 지원 등 사업 수행을 위하여 출연 필요
 - 4) 사무내용
 - 음악연주활동 및 연주자 육성사업
 - 음악·공연 교육사업 및 조사·연구
 - 국내 · 외 공연예술단체와의 교류 · 협력
 - 문화예술진흥을 위하여 서울특별시장이 위탁하는 사업
 - 그 밖에 재단의 목적 달성을 위한 부대사업
- 나. 재단법인 서울시립교향악단 기관 개요
 - 1)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175
 - 2) 규 모 : 건물 2,043.58㎡
 - 3) 소요예산 : 19,617백만원
 - ※ 예산심의 과정에서 조정될 수 있음.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재정법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를 할 수 있다.

- ②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다.
- 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한다.

나. 예산조치 : 2024년도 예산편성

다. 합 의: 해당사항 없음

Ⅲ. 검토보고 요지(수석전문위원 주우철)

가. 동의안의 개요

 본 동의안은 2024년도 서울특별시 세출예산안에 서울시립교향악단 출연금을 편성하기에 앞서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서울특별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제출되었음.

나. 서울시립교향악단 현황

- 서울시립교향악단은 서울특별시민을 위한 문화예술의 향수(享受) 기회를 확대하고, 문화도시로서 서울의 음악적 수준과 역량을 국내외에 널리 알리기 위하여 2005년 재단법인으로 설립되었음.
- 현재 조직현황은 1경영본부 5팀(기획협력팀, 경영지원팀, 공연사업팀, 사회공헌팀, 홍보마케팅팀)에 경영본부 직원 36명. 교향악단 단원 97명으로 총 134명

(대표이사 1명 포함)의 정규인력을 갖추고 있으며(2023.8.1.기준), 별도의 운영 시설은 없음.

< 서울시립교향악단 인력 현황 >

□ 정원 164명 / 현원 134명

구 분	총원	대표이사	음악감독	공연기획자문역	상임작곡가
정 원	4	1	1	1	1
현 원	1	1	_	_	_
과부족	△3	_	△1	△1	△1

○ 교향악단

구분	총원	부지휘자	악장	부악장	제1수석	제2수석	부수석	차석	단원	악기· 악보위원
정 원	123	2	2	1	14	4	14	6	76	4
현 원	97	1	_	2	-	10	1	4	66	4
과부족	△26	△1	△2	1		<u> </u>	_	⁷ 6	△10	_

○ 경영본부

구 분	총 원	본부장	팀장	팀원	행정지원직
정 원	37	1	6	26	4
현 원	36	1	5	26	4
과부족	_	_	△1	ı	_

^{*} 행정지원직: 비서 1명, 운전기사 1명, 환경미화 2명

○ 2023년 본예산은 출연금(154억 3천 2백만원)과 자주재원(50억 7천 9백만원)을 포함하여 총 226억 9천 8백만원이며, 클래식 연주 활동인 정기공연, 시민 공연과 클래식 저변확대를 위한 교육, 홍보 등의 사업을 수행하고 있음.

다. 출연의 규모 및 적정성

 서울시립교향악단은 예술부문 역량을 강화하고, 시민들이 클래식을 쉽게 향유할 수 있도록 대형 시민공연뿐만 아니라 소규모의 찾아가는 시민공연 등을 확대하기 위하여 지난해 대비 27.1%가 증액된 196억 1천 7백만원의 출연 동의안을 제출하였음.

< 최근 5개년 간 서울시향 출연금 편성 현황 >

(단위 : 천원)

구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안)
총예산	24,584,298	20,842,585	21,502,692	22,698,150	26,117,444
출연금	18,009,225	14,204,852	14,841,714	15,432,486	19,617,136
자주재원율	26.7%	31.8%	31.0%	32.0%	24.9%

라. 출연금 등 예산편성 현황

1) 수입예산

○ 본 동의안에서 서울시향의 수입예산안 총액은 261억 1천 7백만원으로 전년 대비 34억 1천 9백만 원(15.1%)이 증액되었고 이 중 출연금은 196억 1천 7백만원으로 전년 대비 41억 8천 5백만원(27.1%)이 증액되었음.

< 2024년도 서울시립교향악단 수입예산안 총괄 >

	구 분	2024년도	2023년도	증감액	증감률
	계	26,117,444	22,698,150	3,419,294	15.1%
출	현금	19,617,136	15,432,486	4,184,650	27.1%
入	나주 재원	5,488,492	5,078,620	409,872	8.1%
	공연사업	2,767,742	2,428,720	339,022	14.0%
	일반사업	2,720,750	2,649,900	70,850	2.7%
서	l계잉여금	1,011,816	2,187,044	△1,175,228	△53.7%

- * 2023년도 예산은 본예산 기준임.
- 세계잉여금은 당해 사업연도의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차감한 금액으로 다음 연도의 세입예산에 편성되는 예산으로, 지난해 대비 △53.7% 감소한바, 코로나19 종식에 따라 올해는 예산집행률이 대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임.

2) 지출예산

- 지출예산안 총액은 261억 1천 7백만원이며 이 중 ▶사업비는 79억 3천 8백만원으로 전년 대비 7천 1백만원(0.9%) 증액되었고, ▶인건비는 145억 5천 5백만원으로 전년 대비 34억 1천 6백만원(30.7%) 증액되었고, ▶관리비는 28억 7천 8백만원으로 전년 대비 6천 5백만원(2.3%) 증액되었음.
- 지출예산안의 주요 증액 사유는 인건비가 대폭 증가하였기 때문인데, 이는 2024년부터 임기가 시작되는 음악감독의 기본급여와 활동 수당 약 27억원의 증액 편성이 반영된 것임.

< 2024년도 서울시립교향악단 지출예산안 총괄 >

	구 분	2024년도	2023년도	증감액	증감률
	총 계	26,117,444	22,698,150	3,419,294	15.1%
У	나업비	7,937,807	7,867,145	70,662	0.9%
	공연사업	6,224,981	6,276,660	△51,679	△0.8%
	일반사업	1,712,826	1,590,485	122,341	7.7%
jo	뱅정운영경비	17,734,244	14,270,618	3,463,623	24.3%
	인건비	14,555,406	11,139,153	3,416,253	30.7%
	관리비	2,878,411	2,813,125	65,286	2.3%
	시설비	300,424	318,340	△17,916	△5.6%
0	118181	445,396	560,387	△114,991	△20.5%

- 지출예산안의 주요 증감 내역은 다음과 같음.
- 증액 사업은 ▶시민공연 6억 6천 9백만원(54.9%), ▶순회공연 2억 3천 8백만원 (65.9%), ▶음반사업 1억 2천 9백만원(252.5%) ▶급여 34억 1천 6백만원 (30.7%), ▶연금부담금 등 8억 8천만원(100.0%)임.

- 감액 사업은 ▶정기공연 11억 1천만원(△28.0%), ▶단원·부지휘자 모집 1억 9천 2백만원(△43.5%), ▶복리후생비 10억 6백만원(△30.7%)임.

3) 주요 증액 사업

< 2024년도 서울시립교향악단 지출예산 중 주요 증액사업 >

세부사업명	2024년	2023년	증감액	증감률
시민공연	1,889,202	1,219,800	669,402	54.9%
순회공연	598,686	360,850	237,836	65.9%
급여	14,555,406	11,139,153	3,416,253	30.7%
연금부담금등	879,776	_	879,776	100%

- '시민공연'은 '아주 특별한 음악회', 찾아가는 '맞춤형 콘서트 등 약자와의 동행을 통한 사회공헌을 실행하는 사업으로 총 6억 6천 9백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음.
- 이는 대표 여름 음악회인 ▶강변음악회 1회 증회, ▶파크콘서트 공연을 야외만이 아닌 실내에서도 추진하기 위해 1회 추가 편성, 올해 4월 협찬 공연으로 진행했던 ▶아주 특별한 음악회를 고유사업으로 신규 1회 등시민공연 횟수가 증가된데 기인함.
- '순회공연'은 서울시향이 해외 도시들을 방문하여 공연을 추진함으로써
 아시아 최고를 넘어서 글로벌 오케스트라로 발돋움하고 서울시향의 국제적
 위상을 높이기 위한 사업으로 2억 3천 8백만 원이 증액되었음.
- 2023년 1회(영국)이던 공연 횟수를 2024년에는 2회(아부다비, 상하이)로 확대

편성함에 따라 예산이 증액되었음.

4) 주요 감액 사업

< 2024년도 서울시립교향악단 지출예산 중 주요 감액사업 >

세부사업명	2024년	2023년	증감액	증감율
정기공연	2,848,869	3,958,693	△1,109,824	△28.0%
단원 ·부지휘자 모집	249,294	440,880	△191,586	△43.5%
복리후생비	245,000	1,251,429	△1,006,429	△80.4%

- * 2억원 혹은 40.0% 이상 감액된 세부사업임.
- '정기공연'은 서울시향의 대표 공연 사업으로 월드클래스 지휘자 및 협연자들과 함께하는 수준 높은 공연을 선보임으로써 시민에게 양질의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11억 1천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음.
- 올해 정기공연의 외부 지휘자로 출연했던 음악감독 내정자가 2024년부터는 신임 음악감독으로 임기를 시작하기에 출연료 일부를 미편성한 것때문임.
- '단원 ·부지휘자 모집'은 교향악단의 연주력 강화를 위하여 세계적인 수준의 역량을 가진 연주자를 확보하기 위한 사업이며, 1억 9천 2백만원이 각액 편성되었음.
- 올해 단원 채용에서 음악감독 내정자를 외부위원으로 위촉하면서 심사를 진행하였지만, 2024년부터는 내부 심사위원으로 변경됨에 따라 외부위원 심사료 일부를 미편성하면서 감액이 발생하였음.
- '복리후생비'는 근로자를 위한 복지제도 시행을 위해 편성하는 예산이며,

1억 9천 2백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음.

- 이는 행정안전부에서 발간한 2024년 지방출자·출연기관 예산편성 운영 지침에 따라 복리후생비로 편성한 근로자의 사회보험부담금을 연금부담금 등으로 분리 편성했기 때문임.

< 2024년도 지방출자·출연기관 예산편성 운영지침 >

		기 존	개 정		
목	세목	과목해소	목	세목	과목해소
212 복리 후생비	01 사회 보험 부담금 09 기타 복리 후생비	1. 근로자에 대한 국민연금부담금, 건강보험료, 산재·고용보험료 사용자 부담분 2. 예술인 고용보험료 사용자 부담분 1. 각 기관의 복지후생규정에 의가편성 2. 연봉대상자의 부가급여 중 복리 후생비에 해당되는 경비 3. 선택적근로복지제도 시행경비 (사내복지기금을 적립하고 있는 경우 이를 우선 활용) 4. 직업복, 위생복, 근무복 등 피복구입 또는 제조경비 5. 침구류 구입 6. 안전모, 안전화, 작업화 등 개인	201 일반 운영비	15 복리 후생비	1. 각 기관의 복고투생규정에 의가편성 2. 연봉대상자의 부기급여 중 복리 후생비에 해당되는 경비 3. 선택적근로복지제도 시행경비 (사내복지기금을 적립하고 있는 경우 이를 우선 활용) 4. 작업복 위생복 근무복등 피복규입 또는 제조경비 5. 침구류 구입 6. 안전모, 안전화, 작업화 등 개인 장비 구입비 7. 급량비(원칙적으로 현금지급 금지) 8. 영유아보육법 제14조에 의한 근로자 자녀 보육비 지원 9. 사내복지기금 출연금
		장비 구입비 7. 급량비(원칙적으로 현금지급 금지) 8. 영유아보육법 제14조에 의한 근로자 자녀 보육비 지원 9. 사내복지기금 출연금	304 연금 부담금 등	01 사회 보험 부담금	1. 근로자에 대한 국민연금부담금, 건강보험료, 산재·고용보험료 사용자 부담분 2. 예술인 고용보험료 사용자 부담분

< 2024년도 서울시립교향악단 지출예산안 세부내역 >

구분	2024년도	2023년도	증 감	증감율
총 계	26,117,444	22,698,150	3,419,294	15.1%
사업비	7,937,807	7,867,145	70,662	0.9%

구분	2024년도	2023년도	증 감	증감율
공연사업	6,224,981	6,276,660	△51,679	△0.8%
정기공연	2,848,869	3,958,693	△1,109,824	△28.0%
기업공연	68,129	57,984	10,145	17.5%
외부출연	175,744	175,063	681	0.4%
시민공연	1,889,202	1,219,800	669,402	54.9%
순회공연	598,686	360,850	237,836	65.9%
대관료	644,351	504,270	140,081	27.8%
일반사업	1,712,826	1,590,485	122,341	7.7%
교육사업	160,625	143,220	17,405	12.2%
음반사업	180,085	51,092	128,993	252.5%
디지털 콘텐츠 제작	275,000	275,000	_	0.0%
월간지발매	186,540	183,550	2,990	1.6%
디자인제작	55,000	50,000	5,000	10.0%
티켓구매자관리	17,740	17,740		0.0%
전산개발	435,900	326,536	109,364	33.5%
후원사업	34,900	33,800	1,100	3.3%
협찬사업	50,000	38,500	11,500	29.9%
단원 ·부지휘자 모집	249,294	440,880	△191,586	△43.5%
단원트레이닝	10,808	10,167	641	6.3%
기부금	56,934	20,000	36,934	184.7%
행정운영경비	17,734,241	14,270,618	3,463,623	24.3%
인건비	14,555,406	11,139,153	3,416,253	30.7%
급여	14,555,406	11,139,153	3,416,253	30.7%
관리비	2,878,411	2,813,125	65,286	2.3%
교육훈련비	40,688	40,688	_	0.0%
행사운영비	145,260	139,860	5,400	3.9%
여비	385,817	199,506	186,311	93.4%
업무추진비	35,600	35,600	_	0.0%
관서운영비	34,800	33,140	1,660	5.0%
직무수행비	60,800	63,680	△2,880	△4.5%
복리후생비	245,000	1,251,429	△1,006,429	△80.4%
사무관리비	344,996	339,816	5,180	1.5%
공공운영비	161,142	193,343	△32,201	△16.7%
평가급	536,532	513,963	22,569	4.4%
포상금	8,000	2,100	5,900	281.0%
연금부담금등	879,776	_	879,776	100.0%
시설비	300,424	318,340	△17,916	△5.6%
자산취득비	53,500	65,000	△11,500	△17.7%
수선유지교체비	102,924	106,540	△3,616	△3.4%
위탁관리비	144,000	146,800	△2,800	△1.9%
예비비	445,396	560,387	△114,991	△20.5%

Ⅳ.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V. 심사결과 : 원안가결(재적위원 9명, 참석위원 8명, 참석위원 전원찬성)

VII. 소수의견 요지 : 「없음」

Ⅷ.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시립교향악단 출연 동의안

의 안 번 호 1214

제출년월일: 2023년 8월 14일 제 출 자:서울특별시장

1. 제안이유

- 가. 서울시에서는 시민에게 문화예술 향유의 기회를 확대하고 양질의 공연예술 활동을 제공하기 위하여 각종 사업을 수행하는 재단법인 서울시립교향악단의 운영을 지원하고 있음
- 나. 이에 2024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서울 특별시 재단법인 서울시립교향악단 출연 여부에 대하여「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미리 그 동의를 얻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사업개요
 - 1) 사 무 명 :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시립교향악단 출연금
 - 2) 추진근거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시립교향악단 설립 및 운영 조례
 - 3) 필 요 성 : 서울의 문화예술 진흥과 시민의 문화예술 활동 지원 등 사업수행을 위하여 출연 필요
 - 4) 사무내용
 - 음악연주활동 및 연주자 육성사업
 - 음악·공연 교육사업 및 조사·연구

- 국내·외 공연예술단체와의 교류·협력
- 문화예술진흥을 위하여 서울특별시장이 위탁하는 사업
- 그 밖에 재단의 목적 달성을 위한 부대사업
- 나. 재단법인 서울시립교향악단 기관 개요
 - 1)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175
 - 2) 규 모: 건물 2.043.58 m²
 - 3) 소요예산 : 19,617백만원
 - ※ 예산심의 과정에서 조정될 수 있음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재정법

-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를 할 수 있다.
 - ②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다.
 - 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나. 예산조치 : 2024년도 예산편성

다. 합 의: 해당사항 없음

※ 작성자 : 문화정책과 문화협력팀 이민성 (☎ 2133-2527)